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4년 7월 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mba.go.kr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월7일(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성장 청검 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과장 : 황수성(042-481-4408) • 사무관 : 곽근열(45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본부장 전우소 : (042-363-7507) • 실장 : 최선일(042-363-7710)

소공인 보유기술 · 제품의 가치를 높인다 !

- 중기청, 소공인 전용 R&D사업 최초 지원 -

□ '97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소공인만의 특화된 기술개발(R&D) 사업**이 실시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R&D)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공인(小工人)'**은 봉제, 수제화, 기계·금속가공 등 노동집약적이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로,

* 사업체수 27.7만 개(소상공인의 9.8%), 종사자수 85만 명(소상공인의 15.4%)

○ **자연 발생적인 집적지*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으며 (전국 278개, '12년 조사) **지역경제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집적지 : 최소 행정구역(읍·면·동)단위에 동일업종 50개 이상 분포한 지역 (집적지 소공인 지원을 위해 현재 8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동 사업은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과제당 4천만 원 이내로 총 **30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제품·공정개선과 브랜드·디자인개발 등도 기술개발(R&D)의 범위**로 포함하여, 소공인 **보유기술·제품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특히 소공인이 정부사업에 참여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문서작성 등 부담을 완화**하고,

- **소공인은 과제성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구성되었다.

* 전문가의 1:1 멘토링을 통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사업신청양식 간소화 등

□ 중소기업청은 올해 1월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8개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동 사업의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사업수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접수기간은 **공고일('14.7.8)로부터 30일**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담기관 또는 집적지 인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사업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야 한다.

□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참여는 소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관련법령 제정 등의 영향으로 소공인 지원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임을 밝혔다.

○ '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되고,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 및 소공인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 소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적·예산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사업내역에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업관련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참조할 수 있다.

[붙임] 1)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 개요 1부.
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요 1부.
3)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1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곽근열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개요

□ 추진목적

○ 기술개발 의지 및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역량이 부족한 소공인의 보유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과제기획 및 과제개발 지원

□ 추진개요

○ **사업예산** : 18억원(기술료 사업)

○ **추진체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담기관), 소공인특화지원센터(관리기관),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진단·지도기관)

○ **사업기간** : '14년 7월 ~ '15년 3월

○ **지원대상** : 8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해당 특화분야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신발제조업, 인쇄제조업, 의류(패션)제조업, 기계·금속·장비제조업, 식품제조업, 귀금속(쥬얼리)제조업

○ **지원조건**

- (업 력) 창업 후 3년 이상(36개월 이상) 업체
- (대응출자) 총사업비의 25% 이상(현물 20% : 현금 5%)

○ **신청과제** : 소공인이 제안한 일반과제(자유응모형 과제)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할 집적지구내 소공인의 신청과제 우선 지원

○ **지원분야** : ①신기술개발 ②제품·공정개선 ③디자인·브랜드개발

○ **참여방식** : 주관기관(소공인) 단독신청 또는 컨소시엄*신청

* 제조업체, 유통업체, 비영리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등과 협력개발 가능

○ **지원규모** : 30개 과제 내외(업체당 40백만원 이내)

* 개발기간, 개발내용 등을 고려하여 4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 **기술료징수** : 면제

□ 사업추진절차(안)

○ (1 단계) 과제기획 지원(60개 예비과제 내외, 최대 10회(1개월 이내)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사업공고 (전담기관)		신청·접수 (신청기관)		신청과제 기획지원 (진단·지도기관)		신청과제 추천 (추천위원회)
5 단계	→	**6 단계**	→	**7 단계**	→	**8 단계**
신청자격 등 검토 (전담기관)		서류(서면)평가 (평가위원회)		예비과제 선정 (전문기관)		예비과제 기획지원 (전문기관)

○ (2 단계) 과제개발 및 기획멘토링 지원(30개 예비과제 내외)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사업계획 제출 (주관기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진단·지도기관)		지원과제 지원 (전담기관)

□ 주요내용

○ 영세성, 고령층, 정부사업 참여 경험 미흡 등 소공인의 특성을 감안, 타 기술개발사업과 차별화된 맞춤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추진

* 사업계획서(약식), 오프라인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등

○ 소공인 특성을 감안, 과제기획*과 과제개발**로 2단계로 구분 지원

– (1 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애로 진단 등 과제기획 지원
(60개 예비과제 내외, 최대 10회 지원)

– (2 단계) 기술·제품 부가가치화를 위해 필요한 직접성 경비 지원
(30개 지원과제 내외, 최대 40백만원 한도)

- (멘 토 링) 과제를 수행하는 소공인과 기술멘토를 적절하게 매칭하여 사업수행과정상의 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1:1멘토링 지원

* 수정사업계획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사업 관련 주요보고서 및 연구노트 작성, 기술보안 등 지원(최대 10회)

○ 소공인의 경우, 정부사업 참여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적절하게 사용토록 전담기관에서 사업비 집행·관리 지원

*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과제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발환경 조성 및

별도의 사업비 정산절차 생략으로 편리성 제고

붙임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요

◇ **소공인 집적지 內에 8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각 집적지·업종별 특성화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로 활용

◇ '14년도에는 소공인 특화교육, 공동제조장비 활용 지원, 작업환경 개선 등 **총 35개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집적지 소공인 **현장 밀착 지원**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운영기관 30%이상 대응출자)

* 소공인 집적지 내 센터 설치·운영 및 특화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추진실적** : 8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민간위탁 7, 공단직영 1)



지역	분야	운영기관	개소
서 울	수 제 화	서 울 성 동 제 화 협 회	'13.5월
	의 류 제 조	한 국 의 류 산 업 협 회	'13.6월
	기 계 금 속	(사)한국소공인진흥협회	'13.5월
	인 쇄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13.5월
부 산	섬 유 패 션	(재)부 산 디 자 인 센 터	'13.5월
인 천	기 계 부 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8월
경 기	제 과 제 빵	성 남 산 업 진 흥 재 단	'14.6월
대 구	쥬 얼 리	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 **소공인 집적지(업종)별 맞춤형(35개 세부사업) 특화사업** 실시

지역	집적지	분야	세 부 추 진 사 업	비고
서 울	성 동 구 성 수 동	수제화	소공인 특화교육, 소공인 공동사업 지원사업, 판로개척·홍보지원, 구두데이행사개최	4개사업
	종로구 창신 동	의 류 제 조	소공인 특화교육,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소공인 기술컨설팅 지원사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4개사업
	영 등 포 구 문 래 동	기 계 금 속	소공인 특화교육,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디렉토리제작, 한국소공인정밀기술경진대회개최	4개사업
	중 구 쌍 림 동	인 쇄	소공인 특화교육, 소공인 기술컨설팅 지원사업,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3개사업
부 산	동 구 범 일 동	섬 유 패 션	소공인 특화교육, 소공인 공동제조장비 활용 지원사업,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소공인 봉제장비임차지원, 마케팅디자인지원	5개사업
인 천	동 구 송 림 동	기 계 부 품	소공인 특화교육, 집적지 네트워크 구축, 공동마케팅 지원, 비즈니스 현장지원, CAD시스템 지원	5개사업
경 기	중 원 구 상 대 원 동	제 과 제 빵	소공인 특화교육, 소공인 공동사업 지원사업,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소공인 제품구매 상담회 개최, 국내전문전시회 참가지원	5개사업
대 구	중 구 성 내 1 동	쥬얼리	소공인 특화교육, 소공인 공동사업 지원사업, 소공인 기술컨설팅 지원사업,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기술기능경기대회개최	5개사업

붙임3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2014년도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공인의 신기술, 제품·공정개선, 브랜드·디자인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14년도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 수행경험. 역량 및 인력 등이 부족한 소공인의 R&D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소공인 특화 R&D지원체계를 마련하고,

○ 과제개발 전주기별 과제기획과 신기술, 제품·공정개선, 브랜드·디자인 분야 등에 소요되는 과제개발을 단계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14년 7월 ~ '15년 3월

□ **'14년 지원규모** : 18억원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우수과제만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

□ **지원대상** : 8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하단 관리기관 참조)의 해당 특화분야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업체

* 신발제조업, 인쇄제조업, 의류(패션)제조업, 기계·금속장비제조업, 식품제조업, 귀금속(쥬얼리)제조업

□ **신청과제** : 소공인이 제안한 일반과제(자유응모형 과제)

* 각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할 집적지구내 소공인의 신청과제 우선 지원

□ **지원분야** : ① 신기술 개발, ② 제품·공정개선, ③ 브랜드·디자인 개발

* 브랜드·디자인 : ① 또는 ②와 연계되는 과제 우선지원

☐ **지원금액** : 40백만원 한도(30개 지원과제 내외)

* 과제개발내용, 과제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40백만원 한도내 차등 지원

- 단, 신기술 개발 또는 제품·공정개선과 연계과제가 아닌 디자인·브랜드 개발의 경우에는 20백만원 한도내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과제개발 전주기별 과제기획 및 과제개발 지원**

○ **(1 단계) 신청과제 과제기획 지원(관련예산 소진시까지)**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청기관의 사업신청서, 약식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신청과제 작성 지원

○ **(2 단계) 예비과제 과제기획 지원(60개 과제 내외)**

- 서면평가를 통과한 예비과제의 과제책임자와 과제기획전문가를 매칭하고, 정식 사업계획서 수립, 기술애로 진단 등 과제기획 지원

* 지원횟수 :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0회까지 지원(1개월 이내)

○ **(3 단계) 과제개발비 및 지원과제 멘토링 지원(30개 과제 내외)**

- **(과제개발)**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지원과제의 개발기간 내 성공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40백만원 이내, 최대8개월)

* 신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디자인·브랜드 개발 분야의 과제개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지원

- **(멘 토 링)** 과제개발 전념 및 행정부담 경감 등을 위해 기술자문 및 제출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1:1 멘토링 지도

* 지원횟수 :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0회까지 지원(과제개발기간 중)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이고,

-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주관기관 단독과제 및 협력기관과의 공동과제 모두 신청 가능

<주관기관 신청자격요건 >

요 건		세 부 내 용
1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신청기관
2	업 력	◦ 업력이 3년 이상인 신청기관
3	업 종	◦ '14년 현재 지정된 8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특화지원업종 * [붙임 1] 소공인 지원대상 업종 참조
4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물 20% : 현금 5%) *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금 75% + 대응출자금 25%
5	정부사업 참여횟수	◦ '05년 이후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디자인·브랜드 개발 관련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는 신청기관 * 기수혜자 및 수행중인 자는 참여 불가(신청마감일 기준)

☐ **협력기관(공동개발기관)**

○ 과제구현을 위해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은 제외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대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자체는 협력기관으로 참여 불가

3. 지원금액 및 한도

☐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최대 40백만원 한도)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물 20% : 현금 5%)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8개월, 4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과제개발기간, 과제개발 범위 등을 감안하여 4천만원 한도내 차등 지원

○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술료	비고
최대 40백만원 이내 (개발기간 8개월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총 사업비의 25% 이상	면제	자유응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4년 7월 8일(화) ~ 8월 6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신청(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관은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접 수 처** : 소공인 지원대상 업종별 관할 관리기관에 신청·접수

* 지역제한 없이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신청·접수가 가능하나, 소공인 지원대상 업종별 해당 관리기관으로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약식 사업계획서 1부, USB 또는 CD 1개*

* 사업신청서와 약식 사업계획서를 저장하여 제출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등은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4년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향상지원 시범사업 추진절차도 >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신청·접수 (신청기관)		신청과제 추천 (추천위원회)		서류(서면)평가 (평가위원회)		예비과제 선정 (전담기관)
'14.7.8~8.6		'14.8.12		'14.8.18~20		'14.8.22

5 단계	→	6 단계	→	7 단계	→	8 단계
과제기획 지원 (진단·지도기관)		사업계획 제출 (예비과제 수행기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14.8.22~9.16		'14.9.18		'14.9.22~24		'14.9.26

* (신청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단·지도기관)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과제기획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업체)

○ **(1 단계) 서류평가**

- 기술분야별(또는 업종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각 관리기관에서 추천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서류(서면)평가 실시

* 추천과제 중에서 예비과제 60개 내외로 최종 선정(2배수 이내)
* 평가항목(안) : 과제개발 필요성, 과제개발내용의 적절성 등

○ **(2 단계) 발표평가**

-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정식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지원과제를 30개 내외 선정

* 발표자료(PT) 별도 제출 없이 기 제출된 정식 사업계획서를 발표평가 자료로 활용
* 평가항목(안) : 과제개발 추진의지, 보유기술 고도화 가능성, 부차가치 창출 가능성 등

7.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협력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8. 기타 공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동 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9. 문의처

□ 관리기관(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역	업 종	기 관 명	연 락 처	주 소
서울	신발제조	서울성동제화협회	02-465-7093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１０７
	인쇄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02-2277-2922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140(쌍림동)
	의류(패션)	한국의류산업협회	02-741-5366	서울 종로구 창신길 28-1, 2층
	기계·금속·장비	㈔한국소공인진흥협회	02-2634-7727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8길 9
부산	의류(패션)	㈜부산디자인센터	051-790-104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우동)
경기	식품제조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8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동 3층(SKⓝ테크노파크)
대구	귀금속(쥬얼리)	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053-661-2361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176(동문동38-6)
인천	기계·금속·장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천지역본부)	032-588-2302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인천산업유통단지 편익상가 A동 B25호

□ 전담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서명	전 화	문의사항
협업지원실 (소공인팀)	042-363-7714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